



고 용 노 동 부

수신 참여연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질의(노동사회 2012-0501)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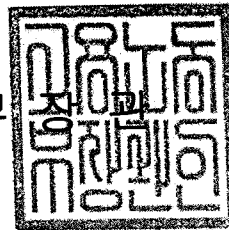
2. 우리부는 쌍용차의 경영회복,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12.4. 장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급휴직자 등의 재취업촉진·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 단체가 '12.4.25.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쌍용차에서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무급휴직자 등이 기존에 종사하였던 업무분야에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하여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09.8.6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나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하였던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 조항(근로기준법 제25조)은 해고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금번 채용공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5. 한편, 우리부에서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며, 설혹 무급휴직자 복귀에 적합한 직종이 없는 경우라도 전직훈련 등의 실시를 통해 복직이 가능토록 하거나,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12.5.4. 사측에 공문으로 지도한 바 있으며, 아울러 무급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주무관

이정문

행정사무관

김동욱

노사관계법 전결 2012. 5. 24.
제과장 김성호

협조자

시행 노사관계법제과-1716 (2012. 5. 25.)

접수

우 427-718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www.moel.go.kr

전화번호 02-6902-8228 팩스번호 02-503-9731 / jm1120@moel.go.kr / 비공개(5,6)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